

[별표 4]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(제21조 관련)

<개정 2022.7.7.>

1.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- 가.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·이용 목적
- 나.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
- 다.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
- 라.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
- 마. 신용정보의 사용·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·반납에 관한 사항
-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

2.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- 가.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
- 나.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
- 다.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
- 라.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
- 마.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
-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

3.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- 가.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
- 나.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
- 다.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- 라.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
- 마.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
- 바.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

4.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

- 가.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,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
- 나.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다.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
- 라. 목적 달성 후 파기,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

보하는 사항

마.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·감독하는 사항(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)

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